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유형에 관한 세부분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른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에 따라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직접 작성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재활용현황 조사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수산부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 현황

나. 시·도 및 시·군·구별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시설, 자원화시설
및 처리업체 현황

다. 시·도 및 시·군·구별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 현황
라.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수산부산물 재활용정책 실태조사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도별 이
행상황

나. 시·도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처리 및 재활용 예산 지원 현황
다.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생산자단체 등의 협조
를 얻어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배출량 및 이동경로 등을 관리할 수 있
다.

제4조(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
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시설·장

비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나. 차량의 설비, 구조, 제원 및 운반배출 능력에 관한 설명서

다.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의 설비에 관한 설명서

라.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 영 제10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나. 파쇄·분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를 위한 설비 또는 호기성(好氣性)·혐기성(嫌氣性) 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위한 설비에 관한 설명서

다. 소성로(燒成爐) 등 중간처리를 위한 설비에 관한 설명서, 제품 제조공정의 설명서

라. 보관시설 또는 보관장소의 설비에 관한 설명서

마 기술인력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바.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보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② 제1항의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해

야 한다.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기술인력이 교체된 경우
4. 보유하고 있는 차량의 교체로 인해 운반 능력이 증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이 소재하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고 30일이 지나도록 실태점검이나 접수증의 발급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하면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①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휴업·폐업일로부터 30일 이전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휴업·폐업의 사유

나. 보관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종류와 양

다. 보관하고 있는 수산부산물의 처리방법과 처리기한을 증명하는 서류(다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재개업의 사유

나. 시설과 인력의 현황

다. 재개업 이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제8조(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의 지원) ①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처리업자가 영 제17조제3호에 따라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해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참관하여 채취한 시료를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조사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원화시설의 운영) 법 제17조제6호에서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
활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활용 제품의 안
전성 검증 및 판로 확대사업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및 세부분류(제2조 관련)

1. 수산부산물을 원형 그대로 재사용(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유형(FR-1)
 - 가. FR-1-1: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나. FR-1-2: 원형 그대로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2. 수산부산물을 단순 수리·수선,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FR-2)
 - 가. FR-2-1: 단순 수리·수선, 세척하여 본래의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 나. FR-2-2: 단순 수리·수선, 세척하여 본래와 다른 용도로 재사용하는 유형
3. 연안환경개선, 해양정화 등을 위해 해양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FR-3)
 - 가. FR-3-1: 패류의 껍데기를 세척, 파쇄하는 등 단순가공과정을 거쳐 「골재채취법」 제29조에 따른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복원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플라스틱류의 혼합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을 충족할 것
4. 제품의 원료로 제조하거나 제품을 제조하는 유형(FR-4)
 - 가. FR-4-1: 분리, 선별, 압축, 감용, 절단, 파쇄, 분쇄, 용융, 반응, 증발·농축 등의 공정을 통해 수산부산물을 종이, 금속, 유리, 합성수지 또는 섬유, 고무제품 이외의 원료물질로 제조하는 유형으로 수요처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 나. FR-4-2: 유·무기성 화합물, 산화물 등의 화학물질이나 안료나 도료, 페인트, 착색제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유형으로 수요처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소성공정을 거친 뒤 석회석 대체재로서 제철소 소결제, 탈황제 등의 원료물질로 사용하거나 생석회를 제조하는 경우(FR-5)
 - 가. FR-5-1: 제철공정의 원료물질 또는 생석회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패류의 껍데기에서 플라스틱류의 혼합물을 제거하고 열을 가하여 유기성분을 제거하는 등 제철소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나. FR-5-2: 발전소의 탈황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류의 껍데기에서 플라스틱류의 혼합류를 제거하고 열을 가하여 유기성분을 제거하는 등 탈황제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6. 건설자재 혼합원료 및 인공어초 등 수생생물의 서식장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FR-6)

가. FR-6-1: 석회성분을 원료로 하는 건설자재에 폐류의 껍데기를 혼합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용자재로서 수요처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나. FR-6-2: 폐류의 껍데기를 철강슬래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와 혼합하여 친환경투수블록 등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수요처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다. FR-6-3: 폐류의 껍데기를 세척, 파쇄하는 등 단순가공공정을 거쳐 해양에 수생생물의 서식장소로 활용하는 인공어초 또는 김종자배양용 인공채묘판 등의 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요처의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7.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나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경우(FR-7)

가. FR-7-1: 「비료관리법」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나. FR-7-2: 「사료관리법」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8.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원료물질로 사용하는 경우(FR-8)

가. FR-8-1: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원료물질로 수산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품법」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나. FR-8-2: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원료물질로 수산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9.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경우(FR-9)

가. FR-9-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원료물질로 수산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것

나. FR-9-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물질로 수산부산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할 것

10. 그 밖에 수산부산물을 가공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FR-10)

※ 비고: 코팅사 등 수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수산부산물에 혼합되어 있는 플라스틱 등 혼합물은 제거기준 중량당 0.1퍼센트[(0.1%(g/kg))] 이하가 되도록 제거해야 한다.